

2021년 가북면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1. 3. 15. ~ 3. 18. / 4일간
- 감사범위 : 2018. 3. 31. ~ 감사일 현재
- 감사인원 : 감사담당주사 등 6명

II 감사결과

1] 예산·회계분야

1) 공공예금계좌 발생 예금이자 세입조치 미이행

- 「지방회계법」 등에 따라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함에도 2020년까지 일반지출계좌 등 3개의 공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총 *,***원 중 *,***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에 편성하지 않는 등 회계업무처리의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2) 신용카드 사용, 보관·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 신용카드별로 부여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는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 2018년, 2020년에 발생한 특별 포인트를 세입조치 하지 않았고, 관리공무원 교체 시 지방자치구매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상호 확인 및 비밀번호 변경 미이행.

2] 건설분야

1) 건설공사 운반거리 확인 소홀 및 부적정

- 「@@@@ 농로 정비공사」 등 2건에 대하여 설계내역과 실제 사토장의 사토거리의 차이가 있음에도 계약금액 조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준공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 소홀히 하였음.

2) 건설공사 폐기물처리 확인 소홀

- 「## 뒷들 및 \$\$ 농로정비공사」 등 16건에 대하여 준공 시 전자 정보처리 시스템, 중량계근표 등 건설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준공서류보완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3)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소홀

- 「%%마을 세천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표시된 부직포설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등 조치없이 준공처리하여 ***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함.

4) 건설공사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업무 소홀

- 「○○○○○○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이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정산 등 조치없이 준공처리하여 ***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함

3] 세무분야

1) 가설건축물 재산세 과세대장 관리 소홀

- 가설건축물은 존치기한이 1년 이상이 되는 것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축조신고가 완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 비과세로 관리하여야 하며, 과세대장 등재 후 비과세로 관리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한이 1년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치기한 1년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일반과세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등 재산세 과세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상속개시에 따른 취득세 과세 누락

- 취득세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세목이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제척기간 내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해 그 신고기한이 경과되었으나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중세포함) *,**,***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4 복지분야

1)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미흡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등 5세대에 대해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징구 및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 2018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본인관리 확인서를 징구 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2)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소홀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사항 안내 지침에 수행기관은 참여자 활동방법, 안전수칙 등 활동에 필요한 참여자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4시간 이상(필수) 포함하여 연간 12시간 이상 활동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중 공공시설봉사 25명, 경로당 회계도우미 1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26명을 대상으로 활동교육과

안전교육을 연간 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업무 소홀

3)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소홀

- 2018년 ~ 2020년 상반기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에 관한 검토 및 정산을 하면서, 물품구입 시 물품대장 미비치 2건, 난방비과다 집행 1곳, 고액금액에 대한 체크카드 미사용 2건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사용 부적정

-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외적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대해 사전결재를 득한 후 추가지원을 하여야함에도, 사례회의 및 사전결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1명 **,***원을 초과하여 지원하여 사례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5] 산업분야

1)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관리 소홀

-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사업 시행지침서'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따르면 마을별 공동기금은 연 1회 이상 회계 관리 담당자의 지정 여부,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및 집행 상태 등을 점검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할 경우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는 1월말까지, 관리협약은 5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작 사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승계받는자, 신규신청자 및 신규 편입 농지 심사, 동일 필지 중복신청 등을 심사하여야 함
-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조건불리직불제로 조성된 마을기금에 대하여 점검지도를 실시하지 않고,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마을과 마을발전계획서 수립 및 관리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경작사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2019년 추기 및 2020년 춘기 산불감시원 채용업무 소홀

- 산림과-16649(2019.09.26.)호 『2019년 추기 및 2020년 춘기 산불 인력 운용계획』에 의하면 전문진화대, 초소감시원, 일반감시원 중 일반감시원은 읍·면에서 각각 10명씩 자체선발 사역하도록 되어 있고, 가북면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문(가북면 공고 2019-13호 (2019.10.2.))에 따르면 '9. 응시 제외 대상자에 마. 체납자 : 지방세 완납확인'로 되어 있음
- 2019년 추기 및 2020년 춘기 산불감시원 채용과 관련하여 2명의 산불감시원 제출서류 중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19.10.14. 가북면 발급)」에 지방세 체납이 있어 응시제외자로 처리하여야 하나, 응시를 시켜 산불감시원으로 채용하게 한 사실이 있음.

5] 주민분야

1)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확인 소홀

- 전입신고가 있으면 관할 이장이 전입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8년 3월 3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78건의 거주여부확인 누락,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확인 누락, 이장확인 누락, 담당공무원 확인이 누락 되는 등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습득 주민등록증 처리 소홀

- 습득 주민등록증을 처리하면서 분실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이미 분실 재발급을 한 때에는 주민등록증 회수처리를 하여 분기별로 파기를 하여야 하는데 2018년 3월 3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3장의 습득증을 회수처리 및 파기를 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보유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사망자 인감대장 관리 소홀

- 『인감증명법』에 따르면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갖추어 두고 신고 인감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사망자의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직권말소 절차를 처리해야 함에도,
-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임장 및 동의서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16건에 대해 접수인을 날인하지 않고, 발급번호 표시를 누락하였음.